

□□□□□□□  
□□□□□□□  
□□□□□□□  
□□□□□□□

出願明細書의 作成要領과 指定商品의 記載要領

特許廳告示 第2號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와 手數料의 徵收規程을 개정함에 따라 特許法施行規則 第31條에 規定한 出願明細書의 作成要領과 商標法施行令 第5條 第2項 및 同法施行規則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商品 등의 記載要領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77年 5月 4日

特 許 廳 長

다 음

1. 出願明細書의 作成要領

- 가. 出願明細書의 크기는 16절지 ( $190\text{mm} \times 268\text{mm}$ )로 하여  $60\text{g}/\text{m}^2$ 의 白上紙를 使用함을 原則으로 한다.  
나. 出願明細書는 上端 25mm, 下端 15mm, 左端 20mm, 右端 15mm의 餘白을 두고 線을 그어 그 内容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 出願明細書의 作成은 한글로 띠어쓰되 打字함을 原則으로 하여 1면의 字數는 統一 打字機의 字版을 基準으로 20行 以内로 하여야 한다.  
라. 出願明細書의 各面에는 左側上部로부터 線밖에 每 5行마다 그 該當 行數를 表示하고 下端線 밑 中央에 그 面數를 一連番號로 記入하여야 한다.  
다만 面數의 表示는 圖面은 包含하되 申請書, 讓渡證, 委任狀 및 其他 參考資料는 除外한다.

2. 商標登録出願時 指定商品 記載要領

- 가. 適用範圍  
1) 商標(營業標, 業務標章 包含) 登錄出願  
2) 聯合商標(聯合營業標, 聯合業務標章 包含) 登錄出願  
3) 指定商品(指定營業, 指定業務 包含) 追加登錄出願  
4) 獨立商標(營業標, 業務標 包含)와 聯合商標(聯合營業標, 聯合業務標章 包含)間의 出願變更出願  
나. 記載要領  
1) 指定商品 및 定指營業은 商標法 施行令 第5條

第2項 및 同法施行規則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別表의 營業區分과 商品區分別 商品細目에 따라 指定商品, 指定營業을 商品 또는 營業마다 一連番號를 붙여 明記한다.

다만 商品區分別 商品細目에 揭記된 商品以外의 商品과 營業標에 있어서의 第105類, 第110類, 第112類의 營業과 業務標章에 있어서의 業務는 이를 具體的으로 明記하여야 한다.

- 2) 前(1)에 의한 指定商品, 指定營業, 指定業務의 記載를 다른 類에 屬하지 아니하는 \_\_\_\_\_, 其他 \_\_\_\_\_, “各種\_\_\_\_\_” 等과 같이 表記한 것은 이를 認定하지 아니한다.

但, “其他” 또는 “各種”에 屬하는 商品을 指定하고자 할 때는 그 商品을 具體的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 2) 商標法施行規則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別表의 “商品區分別 商品細目”에서 定한 該當類의 商品全部를 指定하고자 할 때에는 “本類에 明示된 商品의 全部”라고 表記하되 “商品區分別 商品細目”에 前(2)本文에 該當하는 商品이 있는 景遇에는 그 商品을 明記하고 이를 除外한다고 記載하여야 한다.

3. 前各項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特許法施行規則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該當되는 것으로 본다.

附 則

1.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出願明細書 作成 〈例 示〉

25mm  
↑  
↓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사시를 두고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도 그 혜택은 풍성히 아낌없이 내리는 시절은 봄과 여름이요. 그 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에 녹엽이 싹트는 이 때인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먼산을 바라본다. 어떤이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오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가는 이 산 저 산 나날이 새로운 경이를 가져오는 이 언덕, 그리고 하늘을 날리고 노을을 스쳐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빈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어 녹음을 스쳐오는 맑은 바람은 다음 순간에다 모든 것을 가져오지 아니하는가!

20mm  
→

오늘도 하늘은 더할나위 없이 맑고 우리 언덕일대를 덮은 신록은 이제 보다 한층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본벌시간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 놓은 듯이 웃을 훨훨털며, 본관 서쪽 금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출발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앉을만한 조그마한 소나무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마는, 오고가는 우리 동려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 나 자신도 하루동안에 가장 기쁜 시간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여유 있을 때마다 나는 한 특권이나 찾.....

15mm  
←

15mm  
↓

2—1 16절지(190mm×268mm) 60g／백 상지

□□□□□□□□  
指定商品數의 計算方法

特許廳告示 第3號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및 商標法에 의한 特許料와 手數料의 徵收規程의 改正에 따라 同 規程(大統領令 第8561號(第4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商品의 數의 計算方法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77年 5月 4日

特 許 廳 長

1. 指定商品의 數의 計算方法

- 가. 商品類別區分만을 指定하거나 “本類에 明示된商品에 限함과 같이 包括的으로 指定한 것은 出願當時의 當該類 또는 群에 屬하는 全商品細目的 數로 計算한다.
- 나. 商品細目에 “其他……”·“各種……”·“他類에 屬하지 아니하는……”·“……用……”等과 같이 規定된 것은 하나의 商品으로 計算한다. 다만, “其他……”·“各種……”·“他類에 屬하지 아니하는……”의 경우는 이미 出願되었거나 登錄된 것에 限한다.
- 다. 商品細目· 明示되지 아니한 商品을 指定한 것은 그 商品의 數로 計算한다.
- 라. 指定商品을 “……機械와 그 部分品 및 그 附屬品”·“甲 또는 乙”·“丙 및 丁”과 같이 表記한 것은 “……機械”·“그 部分品”·“그 附屬品”·

“甲”·“乙”·“丙”·“丁”을 각 하나의 商品으로 計算한다.

- 2. 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録出願에 있어서의 指定商品의 數는 登錄된 商品의 數로 計算한다. 다만, 前項 各號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當該各號를 準用하되 原登録出願當時의 商品細目에 의한다.
- 3. 登錄查定된 商標登録出願 및 指定商品追加登録出願과 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録出願의 指定商品中 그一部를 抛棄申請한 때에는 그 抛棄한 商品은 이를 計算하지 아니한다.
- 4. 前各項의 規定은 営業標, 業務標章, 聯合商標, 聯合營業標, 聯合業務標章, 営業標權, 業務標章權, 聯合商標權, 聯合營業標權, 聯合業務標章權에 이를 集用한다.

附 則

-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